

「2025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추가모집 공고」

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5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.

2025. 11. 24.

순천시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 기준 4년 간 최대 2,000만원 지원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지 원 금			지급시기	
	계	청 년	기 업	청 년	기 업
계	2,000	1,500	500		
취업장려금(1년 차)	500	300	200	정규직 채용 3개월 후 연내 3개월간 100만원	정규직 직원 채용 3개월 후 2개월 66.5만원, 1개월 67만원
고용유지금(2년 차)	450	300	150	분기별 75만원	분기별 37.5만원
근속장려금(3년 차)	550	400	150	분기별 100만원	분기별 37.5만원
장기근속금(4년 차)	500	500	-	분기별 125만원	-

※ 추가모집 선정 시 올해분 소급 지급 예정

2. 모집개요

- 모집인원 : 총 23명(1년 차 9, 2년 차 5, 3년차 3, 4년차 6)
 - ※ 연차기준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년도 기준
(1년 차 : 2025년, 2년 차 : 2024년, 3년 차 : 2023년, 4년 차 : 2022년)
- 추진절차
 - 모집공고(시) → 공모 신청서, 서류 제출(기업, 근로자) → 심사(시)
→ 최종선정(시)

3. 참여기업 및 근로자 신청서 제출

- 참여기업 및 근로자 신청서 접수
 - 접수기간 : 2025. 11. 24.(월) ~ 12. 1.(월)
 - ※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- 제출서류(첨부파일 참고)
 - 참여기업
 - 공모 신청서(서식 1), 기업평가서(서식 2)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자산규모 확인자료(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)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고용현황 확인자료(4대보험 가입자명부, 4대보험 완납증명서), 정보활용 동의서(서식 3), 기타 평가 증빙자료(미제출 시 불인정)
 - 근로자
 - 표준근로계약서(서식 1), 근로자 채용 관리대장(서식 2), 인력채용 인사기록(서식 3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 4)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직접 방문 :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2층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(중앙로 232)
 - 우편 주소 : 우)57938, 순천시 중앙로 232 평생학습관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

4. 선정결과 발표

○ 순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예정 : 2025. 12. 8.(월)

※ 추진일정 변동 가능 / 미선발 기업에 별도 연락 없음

5. 참여기업 자격

○ 대상기업

- 순천시에 소재하고,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~4년차 청년 근로자가
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

*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ICT기업, 벤처기업,
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
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며, 비영리법인·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
자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
경우 참여 가능

○ 지원한도 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

※ 기존 2025년도 3월 기선정 기업의 경우,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10명을 넘길 수 없음

6. 참여근로자 자격

○ 신청일 기준 순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업에
정규직으로 취업한자

※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

(군복무 기간 1년 미만 : 1세, 1년 이상 ~ 2년 미만 : 2세, 2년 이상 : 3세)

※ 제외대상 기업

○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
○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

○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, 노래방 등)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
○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시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※ 단, 상시근로자는 가능

○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
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
- 참여기업 중 '24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
-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% 미만인 사업장
다만, 대상자(참여 청년)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
-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공기업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학원),
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기타 시·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
인정하는 기업

※ 제외대상 참여자(근로자)

- 대학 재학생(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)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타 시·도에 주소를 둔 자
- 월 급여 총액*이 350만원 초과한 자
* 세전기준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합계(일괄지급 수당 등은 12개월 분할 반영)
-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,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
-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
- 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지원(수당, 자산형성 지원 등)을 받은 자
-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7. 유의사항

-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
 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8. 기타 문의사항 :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(☎)061-749-5745